

#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중심으로 -

홍정원\*

1. 머리말
2.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심흥택의 보고
3.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과 심흥택의 보고
4.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5. 맺음말

## 1. 머리말

沈興澤<sup>1)</sup>이鬱島郡守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울도군의 관할구역인 독도를 일본이 영토 편입한 데 대해 상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서이다.<sup>2)</sup> 그는 1902년 12월 28일鬱島郡守로 임명이 건의되었고, 1903년 1월 29일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1) 沈興澤(1855~?)은 본관이 靑松이고, 洪孚의 22세손으로서 派祖는 3세인 澣이다. 父는 宜東이고, 祖父는 能夏이다. 淸風金氏 仲善의 딸과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다(『靑松沈氏大同世譜』, 靑松沈氏大同世譜刊行委員會, 2002).

2) 申奭鎬,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創刊號, 1948, 96쪽.

『官報』에 임명이 게재되었다.<sup>3)</sup> 하지만 실제 도입은 교통이 불편하여 4월 20일이나 이루어졌다.<sup>4)</sup> 이후 1907년 3월 15일 횡성군수로 임명될 때까지 약 4년간 울도군수로 재직하였다.<sup>5)</sup>

심홍택이 울도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의 울도군은 일본인의 침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일본인은 19세기 후반부터 울릉도에 潛入하며, 삼림을 伐採하고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했다. 일본 정부는 1902년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警察官駐在所를 설치하여 일본인 경찰관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또 심홍택의 재직 시기였던 1904년과 1905년은 러일전쟁으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가 전략상의 중요한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으며, 더 나아가 독도를 영토 편입하는 조치까지 취하기에 이르렀다.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에 있어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취급되었다. 러시아는 1896년 俄館播遷을 계기로 울릉도 森林伐採權을 획득하여 울릉도를 경영하고자 했다. 러시아가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획득했던 것은 삼림뿐 아니라 남하정책상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전후 울릉도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1978년 결성된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회의 일원이었던 宋炳基와 崔文衡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송병기는 울릉도 개척과 지방관제 편입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沈興澤報告書』와 의정부 참정대신의 「指令 第3號」(1906)가 포함된 강원도관찰사서리의 「報告書號外」(규장각 소장)를 발굴, 독도 역사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sup>6)</sup> 또 최문형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의 일환으로서 울릉도삼림벌채권 획득을 살피고, 러일전쟁 당시의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고찰했

3) 『承政院日記』, 光武 6년(1902) 12월 28일: 『官報』 光武 7년(1903) 1월 29일.

4) 『官報』 光武 7년(1903) 8월 11일.

5) 『官報』 光武 11년(1907) 3월 15일.

6) 송병기, 「高宗朝의 鬱陵島·獨島經營」,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다.7) 일본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태정관지령」(1877)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메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었다는 점을 밝히고,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 과정에서 전략적 목적하에 이루어졌음을 고찰했다.8)

상기의 연구들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이 울릉도를 침탈한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이 소상하게 밝혀졌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새로운 사실들을 더해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울릉도의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울도군수의 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우선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경찰관주재소 설치 문제, 그리고 심홍택이 울도군수로 도입하자마자 일본 경찰관주재소의 警部를 찾아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벌채를 항의했던 것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대응을 살피겠다. 또 러시아가 울릉도의 벌목권을 획득하고 직접 경영하고자 했던 것과 1903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러시아 함선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도군 관아를 포위하고 행한 러시아 隊官과 심홍택의 대담을 통해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찰하겠다. 끝으로 1906년 심홍택의 일본 독도 영토 편입 보고를 접한 内部의 지령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실린 『제국신문』(1906.5.1)의 '일본리스에게 교섭하라'라는 기사가 독도 연구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7) 최문형, 「러시아의 鬱陵島活用 企圖와 日本의 對應」: 「발틱艦隊의 來到와 日本의 獨島併合」,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8)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 2.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심홍택의 보고

### 1)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경찰관주재소 설치

심홍택이 울도군수로 도입한 1903년 4월은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이 극심했던 때이다. 일본인은 19세기 후반부터 울릉도에 침입하여 불법 벌채와 어업을 일삼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 정부는 울릉도 개척령을 내리고 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 측에 일본인의 철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1900년에는 울릉도의 행정 기능을 강화시켜 「칙령 제41호」를 통해 명칭을 울도군으로 개칭해서 군으로 승격시키고, 군수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의 벌채는 1900년 5월 内部視察官 禹用鼎이 울릉도를 조사할 때만 해도 일시적으로 잠잠했었는데, 그가 상경한 뒤로는 더욱 심해져서 산에 櫟木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다. 심지어 도민 尹殷中이 지붕을 덮기 위해 나무를 베어 판을 만들자, 일본인들이 이를 저지하며 한 그루의 나무나 풀이라도 한국인들이 베지 못하게 했을 지경이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우려도 더욱 커져갔다.<sup>9)</sup>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폐해가 이처럼 더욱 심해지자 1901년(광무 5) 8월에 일본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이 울릉도에 파견되었다. 조사단은 釜山海關의 스미스(Smith, D.H., 士彌須), 同 幫辦 金聲遠, 東萊監理署 主事 丁寶燮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지 조사를 마친 스미스는 곧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8월). 그 요지는 첫째, 섬 안에 상주하는 일본인 수는 약 550명이며, 이 밖에도 매년 採魚, 伐採차 來島하는 수가 300~400명에 이른다는 것. 둘째, 도내 일본인의 2대 파벌인 '하다모도黨'과 '와기다黨'이 울릉도를 남북으로 分界, 森林을 스스로 領有하여 '認狀' 없이 벌목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벌채를 금하고 위반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 셋

9) 『内部來去文』 照會 第十一號(光武 5년 9월 25일), 奎17794.

제, 도내 일본 선박 수는 板材를 싣고 출범 중인 5척을 포함하여 21척이며, 일본 부산영사관의 准單을 가진 어선 7척과 潛水夫艇 3척이 있다는 것 등이었다.<sup>10)</sup>

이러한 조사 보고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본 측은 1902년(광무 6) 3월 일본인의 재류를 기정사실화하는 방침에서 더 나아가 울릉도에 경찰관주재소를 신설, 경찰을 상주시키기 시작했다.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1901년 말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인과 울릉도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일본인이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철수를 요구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일본인의 울릉도 재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자세하지 않지만, 부산영사관 소속 警部 1명, 巡査 2명을 6개월, 혹은 1년 기한으로 派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찰관주재소 설치를 인지한 것은 이해(1902) 9월 말 강원도관찰사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강원도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 측은 비단 울릉도에 주재소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도민을 임의로 연행하였고, 또 도민들 가운데는 그 억울한 일을 일본 경찰에 호소하는 일조차 있었다고 한다.<sup>12)</sup>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한 한국 정부는 곧 '急行照會'로 조약에 저촉됨을 들어 경찰관주재소의 폐지와 재류 일본인들의 철수를 일본 측에 요구했다(10월).<sup>13)</sup> 그러나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일본인의 울릉도 재류에 대해 이미 수십 년 전에 전 도감 배계주가 울릉도 개척을 위해 요청했기 때문에 재류하는 것이며, 오히려 현재와 같이 울릉도가 개척된 것은 일본인들의 공인데 한국 정부가 이를 모른다고

10) 『皇城新聞』, 光武 6년 4월 29일;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접근』, 역사공간, 2010, 230쪽.

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卷, 本省機密往信 機密 第133號(明治 34년 12월 10일); 송병기, 앞의 책, 231쪽.

12) 『交涉局日記』, 光武 6년 9월 30일; 송병기, 위와 같다.

13) 『交涉局日記』, 光武 6년 10월 11일; 『日案』 6, 文書番號 7057·7501; 송병기, 위와 같다.

하는 등 억지 주장을 폈다. 또 경찰관주재소 설치에 대해서는 당시 신 군수 姜泳禹의 부임에 즈음하여 일본 경찰 주재 문제를 협의한 바 있었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sup>14)</sup>

울릉도의 일본 경찰 주재 문제에 대해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고쿠부 쇼타로(國分象太郎)가 신 군수 강영우와 몇 차례 접촉하면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강영우는 도입을 앞두고 현지 일본인의 작폐 때문에 크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일본 측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던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일개 군수에게 외국 경찰의 주재를 허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히 한국 정부와 협의했어야 할 문제를 도입조차 하지 않은 일개 군수와 협의하고, 이를 핑계로 타국에 경찰서를 주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 2) 심흥택의 보고와 대한제국 정부의 조치

일본인의 작폐가 심화되는 가운데 심흥택은 1903년 4월 20일 울도군에 도입했다.<sup>16)</sup> 그는 우선 울릉도의 형편을 살펴보고 일본인의 폐해가 심각함을 인식했다. 특히 일본인의 벌채가 한이 없어 몇 년 지나지 않아 남는 나무가 없고 산도 모두 황폐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미 울릉도에 군을 설치했으니, 군수로서 자신이 당연히 일본인의 불법 벌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도입한 지 일주일만인 4월 27일 일본 경찰관주재소의 警部 아리마 다카요시(有馬高孝)를 찾아가 “타국인이 우리나라의 재목을 취하는 것은 이치로도 맞지 않는다. 또 울릉도가 전에는 일개 섬이었으나 지금은 군청이 설치되어 모두 군수의 관할이기 때문에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일본인의 벌목을 금할 것이다. 따라서 귀 경부부터 이 금단을 헤아리라”고 항의했

14) 『日案』公文 第165號(明治 35년 10월 29일) 奎18058.

1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本省機密往信 機密 第133號(明治 34년 12월 10일): 송병기, 앞의 책, 231~232쪽.

16) 『官報』, 光武 7년 8월 11일.

다. 당시 울릉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일본인의 불법 벌채에 대해 신임 군수의 단호한 결의를 일본 정부에게 보여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것이다.

심홍택의 항의에 대해 일본 정부 아리마 다카요시는 “이 섬에서 벌목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수십 년인데, 한국 정부가 일본 공사에게 조회하여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함부로 금할 수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sup>17)</sup> 그는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일본 부산영사관에 군수와의 대담 내용을 보고했고, 부산영사관은 6월 23일자로 본국(일본) 외무성에 정부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했다.<sup>18)</sup>

심홍택도 일본 정부와 대담을 마친 이후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내부에서는 우선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인들에 대해 일본 측과 그동안 교섭했던 과정을 조사했다. 그리고 1903년 8월 12일 내부대신 金奎弘은 심홍택의 보고를 전제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론하며 외부대신 李道宰에게 조회했다.

1900년 내부시찰원과 부산의 일본 영사와 함께 울릉도를 시찰한 후, 일본 측에서는 일본인의 불법 벌목을 당장 금지시키고 향후 정기적으로 撤歸시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벌목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심지어 일본 경찰 관주재소까지 설치했다. 울릉도에 일본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한 것은 萬國約章에 없는 일인데, 양국 간의 교의에도 크게 흠결되고 일본 정치상에도 시비가 있을 듯하니, 이 내용을 일본 공사에게 조회하여 경찰서 관원을 소환하고 잠입한 일본인들도 철귀시킬 것을 교섭해달라고 요청했다.<sup>19)</sup>

내부의 공문을 받은 외부에서는 곧 일본 공사에게 상기 사항을 조회했다.

17) 『皇城新聞』, 光武 7년(1903) 8월 10일; 『內部來去文』 照會 第8號(光武 7년 8월 12일), 奎17794;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4號(光武 7년 10월 15일), 奎17895.

18) 『鬱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문서번호 3.5.3.2)

19) 『內部來去文』 照會 第8號(光武 7년 8월 12일), 奎17794; 『內部外部往來公牒摘要』(光武 7년 8월 12일), 奎18021.

한편, 1903년 10월 15일자로 강원도관찰사 金貞根도 외부대신 李夏榮에게 울도군수 심홍택의 상기 보고 내용을 전하고 일본공사관에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가 있다. 이 심홍택의 보고는 앞서 8월에 심홍택이 내부에 보고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보고되면서 내부로 바로 보고된 것보다 시일이 늦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4號(光武 7년 10월 15일), 奎17895).

하지만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이미 1902년 10월 29일자의 공문에 이 내용을 답신했다고 외부대신에게 답변했다.<sup>20)</sup> 하야시 공사가 언급한 1902년 10월 29일자 공문은 앞 1절에서 소개했듯이 울릉도가 개척된 것은 일본인의 공이고, 신 군수 강영우와 경찰서 설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답변이었다. 일본 측으로서는 이미 울릉도 주재 경부로부터 울도군수와의 대담 내용을 보고받았었기 때문에 일본인 벌채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항의에 답변할 준비를 해놓았던 상태였을 것이다.

이처럼 심홍택의 보고로 다시 촉발된 울릉도 재류 일본인과 일본 경찰관 철수 문제는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의 불법 벌채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해졌고, 심홍택은 울릉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내부로 보고했다.

울릉도의 규목을 일본인들이 모두 작별하여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외 잡목과 향목도 작별하여 이미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일본 경부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를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 심한 것은 도동포 근처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부근의 民田을 사서 그들의 상점 가옥을 옮기려는데 밭 주인이 팔지 않으려 하니, 일본인들이 관청에 와서 奸計의 說을 내어 蠶食하려고 하여 그 일본인들에게 통상항구가 아닌 곳에서의 외국인 토지 매입을 금한다고 좋게 말해 주었다는 사실 등이었다.

하지만 그 일본인이 성내는 뜻이 있어 장차 악한 짓을 할까 근심이 되니, 일본 공사관에 조회하여 울릉도의 일본 경찰관주재소와 일본인들의 벌목, 토지 매입 등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덧붙이고 있다. 이에 1903년 11월 26일 내부대신 김규홍은 울릉도 재류 일본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가옥을 건축하려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외부대신 李夏榮에게 일본 공사관에 조회하여 울릉도 재류 일본인과 경찰관을 철수시켜 갈등을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sup>21)</sup> 위와 같은 내용의 심홍택 보고는 강원도관찰

20) 『日案』公文 第152號(明治 36년 8월 24일), 奎18058.

21) 『内部來去文』照會 第16號(光武 7년 11월 26일), 奎17840.

사에게도 전해져 1903년 11월 27일자로 강원도관찰사도 외부대신에게 일본 공사관으로의 조회를 요청했다.<sup>22)</sup>

울릉도군수가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에 대해 보고한 것은 위의 문서를 끝으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더욱이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로는 울릉도군수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을 항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라져 버린 채,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은 더욱 가속되었다.

### 3.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과 심홍택의 보고

#### 1)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 획득과 함선의 울릉도 방문(1899)

울릉도는 1896년(건양 원년) 2월의 俄館播遷을 계기로 그 삼림에 대한 벌채권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브린너(Brynner, Y.I.)에게 특허되었다. 이 밖에도 여러 이권이 러시아 측에 넘겨졌는데, 鴨綠江·豆滿江 유역의 삼림 벌채도 이에 해당되었다.<sup>23)</sup>

러시아가 울릉도에 대한 삼림벌채권을 따낸 것은 울릉도의 삼림뿐 아니라 남하정책상에서 울릉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릉도는 일찍이 1888년 이래로 비티아즈(Vitiaz)호 함장이던 마카로프(Makarov) 제독에 의해 러시아 측에 막연하게나마 그 전략적 가치가 알려졌었다. 물론 마산포 만큼의 가치는 없지만, 본리알리아르스키(Vonliarliarsky)가 지적한 바와 같이 페트로파로블스크와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sup>24)</sup>

그런데 울릉도에는 이미 일본인들이 잠입하여 불법적으로 벌채와 어업을

22)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7號(光武 7년 11월 27일), 奎17985.

23) 『高宗實錄』, 建陽 元年 9월 9日.

24) 崔文衡, 「러시아의 鬱陵島活用企圖와 日本의 對應」,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368~369쪽.

일삼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는 주일 러시아공사를 통해 울릉도 삼림벌채권이 러시아인에게 특허되었으니 일본인들의 벌채를 금지시킬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1899년 8월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는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sup>25)</sup> 훈령을 받은 하야시 공사는 러시아의 울릉도 벌채권이 1896년에 허가되었고 이 사실을 이미 본국(일본)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한제국 外部에게는 이 특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 특허장 전문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우처럼 울릉도에서의 벌채권을 보장 받기를 꾀한 것이었다.<sup>26)</sup>

일본 정부는 러시아공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하야시 공사에게 원산주재 2등영사 또는 부산주재 영사관보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이 사실을 통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sup>27)</sup> 훈령을 받은 하야시 공사는 원산영사관의 외무서기생 다카오 겐조(高雄謙三)을 울릉도로 파견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외무대신 朴齊純에게는 일본 정부가 타인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정신에서 러시아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sup>28)</sup>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에 의하면, 1899년 러시아는 울릉도 경영을 위해 함선을 파견하기도 했다. 러시아 고로니로후호는 林務官 가치예도니후 및 30여 명의 병사를 태우고 원산을 경유하여 주한 러시아공사관 부속 측량기사 마기시모후 및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사 안드레프스랏프짜지를 탑승시켜 11월 3일 울릉도에 도착했다. 이들은 울릉도에 상륙하여 마침 일본인들이 天長節을 봉축하는 일본 국기를 게양하자 폭언을 하며 이를 방해하고, 울릉도가 러시아의 점령지라 일컬었다. 그리고 일본인 30명과 한국인 40명을 바닷가에 세워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고, 연안의 요충지 및 내륙을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卷, 本省其他區文電報來控(明治 32년 8월 7일).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卷, 外部往信, 第83號(明治 32년 8월 11일).

2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卷, 本省其他歐文電報來控(明治 32년 8월 19일).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卷, 外部往信, 第87號(明治 32년 8월 21일).

정밀하게 답사 측량했다. 후일 병영과 水雷營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울릉도 경영을 위한 조사를 마친 러시아 함선은 15명 정도를 울릉도에 남기고 떠났다.<sup>29)</sup>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2월 2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에게 울릉도에서 러시아인이 일본인에게 불온한 행동을 한다는 설이 있어 시찰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sup>30)</sup> 이를 보아 울릉도에서 러시아인과 일본인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00년 울릉도를 시찰한 내부시찰관 우용정은 1899년 10월 1일 러시아 함선 1척이 와서 장교 1명, 통역 1명, 병사 7명 등이 8일간 체류하면서 산천을 둘러보고 지도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리고 규곡 1주를 일본인으로부터 75량(兩)에 구입하고 다음해 3월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전하고 퇴거했다고 보고했다.<sup>31)</sup> 우용정의 보고는 상기 언론 기사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러시아 함선이 울릉도에 정박하여 현황을 조사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에서도 이와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주시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러시아 함선의 동정을 기사화하여 러시아가 울릉도에 병영을 설치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던 것이다. 상기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기사도 일본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언론들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었다. 일본 측은 러시아가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울릉도는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전략상의 주요 거점으로서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899년 원산영사관 외무서기생 다카오 겐죠의 보고에 의하면, 1898년부터 1899년 봄까지 울릉도에 일본인이 150~16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 당시에는 100여 명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재류하며 벌채와 어업을 하고 있었다.<sup>32)</sup>

29) 『독립신문』, 광무 3년(1899) 11월 14일: 11월 25일; 『皇城新聞』, 光武 3년(1899)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5일:12월 7일: 12월 25일.

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卷, 本省電報往信, 轉電(明治 32년 12월 2일).

31) 禹用鼎, 『鬱島記』.

3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卷, 各領事館往復 元山領事館 公第28號(明治 32년 10월 4일).

이 때문에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양도받기를 꾀했다. 이를 위해 1899년 한국의 외무대신과 러시아 대리공사에게 울릉도 삼림벌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러시아 측의 권리를 일본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sup>33)</sup> 실제 민간인을 내세워 러시아 회사로부터 삼림벌채권을 직접 양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sup>34)</sup> 그러면서 러시아 측의 동향을 요의주시하여 성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전 주한러시아공사 마츨닌(N. Matunine)이 10년간 30만 루블이면 상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벌채권 소유자인 브린너의 경성 대리인에게 전보했다고 아오키 외부대신에게 보고하기도 했다.<sup>35)</sup>

러시아는 울릉도 삼림벌채권만 획득했지, 실제로 벌채를 실시하지는 못했다. 벌채권을 획득한 브린너는 우선 함경도 武山의 벌목에 착수했지만 기후가 좋지 못해 두만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목재가 운송 중에 유실되었고, 브린너는 두만강 유역 벌채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결국 브린너는 벌채권을 모두 마츨닌 전 공사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마츨닌도 중국에서 의화단사건(1899~1901)이 발생하자 그 파동이 만주에까지 미치게 되어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4~5년간의 사업보류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승인해 주었다.<sup>36)</sup>

## 2)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1903)과 심흥택의 보고

1903년 러일관계는 러시아의 龍岩浦 점령(4월)과 租借 요구(7월)로 인해 급속히 경색되어 갔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1903년 9월 3일, 러시아 함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卷, 宮內府顧問리젠드르二·三, 機密 第96號(明治 32年 10월 2일); 本省其他歐文電報往信, 明治 32年 10월 18일.

3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卷, 宮內府顧問리젠드르二·三, 機密 第103號(明治 32年 11월 2일)

3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卷, 本省電報往信, 無號往電(明治 32年 12월 15일); 최문형에 의하면, 15년 기한에 20만 루블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교섭이 있었다고 한다(崔文衡, 『韓木 國際關係 속에서의 獨島』,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371쪽).

3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卷, 機密本省往信一·二, 機密 第114號(明治 33年 12월 3일); 16卷, 本省機密往信一·二, 機密 第34號(明治 34年 4월 2일).

선 1척이 1899년에 이어 다시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 함선은 南陽浦洞口에 정박한 후, 隊官 1인, 副官 2인이 兵丁 23인을 거느리고 상륙했다. 그들은 내륙 측량과 나무의 수를 세기도 했으며, 각 포구를 돌며 지형을 그리기도 했다. 일주일 이 지난 9월 10일에는 대관이 병정 27명을 거느리고 와서 군청을 에워싸더니, 울도군수 심홍택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했다. 다음은 러시아 대관과 심홍택 사이의 대담 내용이다.<sup>37)</sup>

러시아 대관 : 이 섬의 나무들은 5년 전에 러시아 회사에서 한국 정부와 약조를 했으니, 이 섬의 삼림은 러시아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인과 타국인은 작별할 수 없거늘, 어찌하여 일본인의 벌목이 심한가? 일본인의 벌목이 한국이나 일본 정부의 허가 文字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회사의 허가 문자가 있는 것인가?

울도군수 : 전부 없다.

러시아 대관 : 그 벌목을 어찌하여 금지하지 않는가? 또 일본 경찰서가 주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 조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울도군수 : 그 조약의 유무는 상세치 않고, 본직이 부임한 후 주재하고 있음을 알았다.

러시아 대관 : 그런즉 그 벌목을 금지하지 않는 연유와 일본 경찰서 주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조 유무를 글로 밝혀 나에게 달라.

울도군수 : 1, 2일 후에 서신을 주겠다.

러시아 대관 : 운선이 곧 출발하니, 오래 머무를 수 없다.

울도군수 : 【서신내용】 1903년 3월 23일(양력 4.20) 부임한 후 일본 경찰서가 本郡 道洞浦에 주재하고 있음을 들었는데, 우리 정부의 약조 유무는 알지 못하나 이미 본군에 주재함에 일단 서로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 경찰서에 가서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有馬高孝)를 만나 삼림 금단의 뜻으로 말했더니, 그가 답하

37) 심홍택이 1903년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과 대관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6號(光武 7년 11월 28일), 奎17985; 『內部來去文』, 照會 第18號(光武 7년 12월 5일); 『皇城新聞』, 光武 7년 11월 17일에 실려 있다. 이 중에서 『江原道來去案』이 가장 상세히 기술되었다.

기를 한일 양국 정부의 문자가 없으니 금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이 뜻을 우리나라 内部에 보고했다.

러시아 대관은 심홍택에게 일본인의 별목이 한국이나 일본 정부, 혹은 러시아 회사의 허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 경찰서의 울릉도 주재가 한국 정부의 허가 하에 있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심홍택은 알 수 없다고 하며 답변에 시일을 끌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관의 재촉으로 본인이 일본 경부를 만나 일본인 별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를 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주었다. 심홍택의 답서를 받은 러시아 대관은 곧 군청 포위를 풀고 도동포로 내려가 지형을 촬영한 후 남양동으로 돌아가 함선을 타고 울릉도를 떠났다.

심홍택은 이러한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과 대관과의 대담 내용을 즉시 강원도관찰사 金禎根에게 보고하며, 울도군의 상황이 실로 편안치 못함을 호소했다. 강원도관찰사는 외부대신 李夏榮에게 심홍택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일본과 러시아 공사관에 조회하여 앞으로 금단케 해 달라고 요청했다.<sup>38)</sup> 강원도관찰사는 내부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 金奎弘은 외부에 조회하며,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에 대한 정부의 인가가 과연 있었는지를 물었다.<sup>39)</sup>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은 일본 측에서도 주시하고 있었다. 일본의 울릉도 주재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는 1903년 9월 12일자로 이 사실을 일본 부산영사관에 자세하게 보고했고, 영사관에서는 10월 7일자로 주한일본공

38)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6號(光武 7년 11월 28일), 奎17985.

심홍택 보고의 끝에는, 이 보고서를 나인 朴陽弘 선편을 통해 보냈었는데, 선박이 바다에 전복하여 다시 보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발생한 사건이 11월이 돼서야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홍택의 보고를 요약한 기사가 『황성신문』 1903년 11월 17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39) 『內部來去文』, 照會 第18號(光武 7년 12월 5일), 奎17794.

내부에서 외부에 조회를 요청한 문서를 보면, 강원도관찰사 제66호 보고서에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관찰사가 내부와 외부에 모두 보고했음을 알 수 있다.

사 하야시 곤스케와 본국 외무성에도 이를 보고했다.<sup>40)</sup> 그런데 이 보고는 심홍택의 보고와는 날짜와 인원이 다소 다르다. 러시아 함선이 다녀간 날을 심홍택은 양력 9월 3일에 와서 9월 10일에 돌아갔다고 했는데,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는 양력 9월 2일에 와서 9월 11일에 돌아갔다고 했다.<sup>41)</sup> 인원도 심홍택은 9월 3일 대관 1인, 부관 2인, 병정 23인이 남양동에서 상륙했다가 10일에는 대관이 병정 27인을 거느리고 군청을 에워쌌다고 했다. 아리마 다카요시는 9월 2일 해군 士官 2명과 水兵 19명이 남양동에서 상륙했고, 11일 사관 2명이 軍吏 같은 자 1명과 수병 16명을 거느리고 군청으로 왔다고 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 울릉도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는 러시아 사관과 심홍택 사이의 대담 중에 수병이 칼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사관이 심홍택에게 書證을 강요하니, 심홍택이 이에 응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보아 심홍택은 러시아 병사가 무기를 소지하고 군청을 에워싸는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러시아 대관과 대담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심홍택은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불법 벌목과 경찰서 주재 사실에 대해 러시아 측이 한국 정부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함선은 울릉도를 방문하여 군수 심홍택에게 삼림벌채권을 주장하며 일본인의 벌채에 항의하고 돌아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일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군사적 목적 하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들은 내륙 측량과 나무의 수를 세기도 했으며, 각 포구를 돌며 지형을 그리기도 했다. 아리마 다카요시 경부도 러시아인의 울릉도 지도를 제작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에는 러일전쟁이 발발했다.(1904.2)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의 만주를 향한 북진로인 압록강, 두만강

4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卷, 各館來信一·二, 韓第41号(明治 36년 10월 7일).

41) 『東京朝日新聞』 1903년 10월 19일자에도 「鬱陵島の露艦」이라는 제하에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 사실이 실려 있다. 이 기사는 10월 8일 일본 濟遠艦이 울릉도에 정박하고 돌아와 그곳에서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러시아 함선이 8월 2일~8일까지 정박했다고 하여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

과 동해상의 울릉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sup>42)</sup> 이 지역은 모두 러시아가 삼림벌채권을 획득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이곳에 대한 러시아의 특권을 말소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1904.5.9). 그리고 하야시 공사는 5월 12일 이하영 외무대신을 만나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고, 1904년 5월 18일자로 고종 황제의 칙선서의 형식으로서 관보 호외에 발표하게 했다.<sup>43)</sup>

러일전쟁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는 것은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Rozhdestvensky) 중장이 의식을 잃은 채 포로로 잡힌 곳이 울릉도 부근이고, 그를 대신해서 함대의 지휘권을 장악했던 네보가토프(Nebogatov) 소장이 잔여 함대를 이끌고 일본에 항복한 곳이 바로 독도 동남방 18마일 지점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sup>44)</sup>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은 鄉長 田在恒으로부터 쓰시마해전에서 패한 러시아 군의 울릉도 상륙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음력 4월 28일(양력 5.28) 섬 서남 대양으로부터 멀리 크게 우레 소리가 들리다가 일모 후에 雷火가 점점 가까워지고 대포가 연발하더니 잠시 후 밤 3경(밤 11시~새벽 1시)이 되어서 병선이 앞바다에 정박하더니 러시아 군인들이 상륙했다고 한다. 그래서 問情을 시도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륙한 러시아 군인들은 함장 1명, 부함장 1명, 병사 774명이고, 이후 배를 스스로 침몰시켰다. 그 다음날 백기 항복하고, 巳時(오전 9시~11시)에 일본 병선 1척이 저동에 정박하여 항복한 러시아 병사들을 모두 실

42) 압록강 연안에서는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04년 2월 15일부터 전투가 시작되어 러시아군은 2,229명이 사망하고, 526명 내지 613명의 행방불명자가 생겨났으며, 약 2,775명 내지 2,48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본군의 경우는 약 1/3 정도의 피해가 생겨 사상자는 889명에서 1,036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심현용,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 21, 2004, 24쪽). 울릉도에서는 일본이 1904년 8-9월 망루를 건설하고 해저 전신선을 부설하여 조선 본토에서 해군진수부가 있는 사세보(佐世保)까지 직접 교신하게 되어 일대 해역을 선점했다(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114쪽).

43) 崔文衡, 『러시아의 鬱陵島 活用企圖와 日本의 對應』,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379~380쪽.

44) 崔文衡, 『露日戰爭과 日本의 獨島占取』, 『歷史學報』 188, 2005, 251쪽.

어갔다고 한다.<sup>45)</sup>

상기 심홍택의 보고는 드미트리 돈스코이호(Dmitri Donskoi)가 울릉도에서 항복했던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돈스코이호는 5월 28일 울릉도 근해에서 일본 순양함과 맞닥뜨려 전투를 벌였는데, 선체에 크게 손상을 입어 울릉도로 가서 전원 상륙했다. 러시아 병사들을 싣고 간 일본 함선은 가스가호(春日号)였다.<sup>46)</sup> 당시 울릉도 주변 해역이 쓰시마해전이 있던 직후 러시아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패주하는 과정에서 일대 격전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보고이다.

#### 4.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 1) 일본의 독도 시찰단 파견

일본은 러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서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 편입 후 1905년 8월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시마네현 지사는 직접 독도를 순시했다. 당초 계획은 마쓰나가 지사가 8월 16일 아침 사카이미나토(境港)에서 제2오키마루(隱岐丸)를 타고 오키(隱岐)의 사이고(西郷)에 기항해서 隱岐島司 등이 일행에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8월 15일에 일정이 연기되었다. 그 후 갑자기 군용선인 교토마루(京都丸)로 가는 것으로 변경되어 오키에는 기항하지 않고, 마케키치 지사와 사토(佐藤) 警務長, 토다(藤田) 縣屬, 오쓰카(大塚) 警部 등 4명만이 8월 19일에 독도로 직행하여 섬을 시찰하고 돌아갔다.<sup>47)</sup>

45) 『皇城新聞』 光武 9년(1905) 8월 10일.

46) 송원호, 「돈스코이호 자침 이후 승조원들의 행적」, 『대한토목학회지』, 51권 5호, 2003; 「돈스코이호 함장의 최후」, 『대한토목학회지』 53권 12호, 2005; 송원호·윤석구, 「러시아 해군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대한토목학회지』 55권 1호, 2007.

47)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221~222쪽.

이듬해인 1906년에는 2차 시찰단이라 할 수 있는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를 책임자로 하는 官民 4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사대가 독도에 파견되었다. 그 중에는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영토 편입 및 貸下 出願人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이 조사대의 보고서 『竹島及鬱陵島』의 작성자(저자)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후쿠이치(福市)) 등도 들어 있었다. 이들은 3월 27일 독도에 도착하여 서도·동도를 차례로 조사하고, 소나무를 기념식수했다.

이어 조사대는 3월 28일 날씨를 핑계로 울릉도에 상륙하였고, 진자이 요시타로 등은 울도군 관아로 가서 군수 심홍택을 방문했다. 진자이 부장은 심홍택에게 울릉도를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고 독도에서 잡은 강치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심홍택은 멀리서 온 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선물에 대한 사례를 표했다. 심홍택은 말씨가 매우 세련되었으나 행정상의 질문에는 대부분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다고 한다. 그리고 진자이 일행과 울도군청 일행은 함께 군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sup>48)</sup>

이 자리에서 심홍택이 진자이 부장의 강치 선물을 받은 것은 1954년 한일 간 외교문서상에서 논란이 되었었다. 일본 측은 만약 울도군수가 독도를 울도군 소속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자이 일행의 선물을 받았거나 감사의 예를 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49)</sup>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울릉도 방문 중 울도군수가 바다사자를 선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조약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한국을 조사하고 다녔으며, 1904년 2월 한일의정서가 강요되었고 진자이 일행의 방문 한 달 전인 1906년 2월에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50)</sup>

당시 울릉도에는 일본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었고, 군청이 있던 도동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자이 일행이 외국령인 울릉도의 호수와 인구, 지세 등을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

48)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附錄『竹島渡航日誌』, ハーベスト出版, 2005(復刻板), 110쪽.

49) 外交部,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일본정부견해』 2(1954.9.9), 1977.

50) 外交部,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한국정부견해』 2(1954.9.25), 1977.

었던 것이다.<sup>51)</sup> 이런 상황에서 설령 진자이 일행이 강치를 선물했고, 심홍택 군수가 감사의 예를 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진자이 일행에게 우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교육지책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질문에는 대부분 납득하지 못했다는 오쿠하라 헤키운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진자이 일행에게 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심홍택에게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죽도금울릉도』나 그 부록 「竹島渡航日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강원관찰사서리 춘천군수李明來의 보고서에 의하여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개 군수에게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비로소 랑고도(독도)의 영토 편입을 한국 측에 알려왔던 것이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가 있는 지 1년 2개월 여가 지나서였다.<sup>52)</sup>

## 2)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와 중앙 정부의 지령

울도군수 심홍택이 강원도관찰사에게 진자이 일행의 울릉도 방문과 일본이 ‘本郡 所屬 獨島’를 편입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 일명 「심홍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947년 한국산악회 주관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申奭鎬 교수가 울릉도청에 소장되어 있던 副本을 찾아 논문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sup>53)</sup>

그 뒤 신석호는 1952년 1월 이후 한일 간 독도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외무부 外交史料調査委員會 위원으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수차 작성했다.<sup>54)</sup>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증거의 하나로 「심홍택 보고서 부분」을 제시한 것이라든지(1953.9),<sup>55)</sup> 일본 측이 「심홍택 보고서」의 원본이 인

51)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119쪽.

52) 송명기, 위의 책, 246쪽.

53) 申奭鎬,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창간호, 1948, 96쪽.

54) 申奭鎬, 「獨島の 來歴」, 『思想界』 8:8, 16~17쪽.

55) 外交部,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한국정부견해」 1(1953.9.9), 1977.

용되지 않았음을 힐난하자(1954.2), 한국 측에서 “일본은 현재 我國 정부의 공문서철 중에 보관하고 있다”(1954.9)<sup>56)</sup>는 답변을 한 것도 신석호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홍택 보고서 부분」은 독도 영유권의 증거의 하나로 제시될 만큼 중요한 문건이었다.<sup>57)</sup>

1978년 4월에 결성된 독도연구모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회의의 일원이었던 송병기는 「各觀察道案」(議政府 外事局)에 편철되어 있는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李明來가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낸 「報告書號外」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심홍택 보고서 부분」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미에는 독도의 일본 영유를 부인하는 의정부 참정대신의 「指令 第3號」도 실려 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sup>58)</sup> 특히 “本郡 所屬 獨島”라는 구절을 통해 독도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조사된 한국 자료 중에서 가장 최초로 독도 명칭이 표기된 문서이다.<sup>59)</sup>

심홍택의 보고서는 이 외에도 『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1906.5.1일자)과 『황성신문』(1906.5.9일자)에도 기사화되었다. 신문 기사상의 심홍택 보고 내용은 “울도군수 심홍택씨가 내부에 보고하되…”라고 시작되어 울도군수가 강원도관찰사와는 별도로 내부에도 보고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성신문』에는 심홍택의 보고 내용만 실린 반면에,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에는 기사 말미에 보고에 대한 내부의 지령도 함께 실려 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外交部,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일본정부견해』 2(1954.2.10): 「한국정부견해」 2(1954.9.25), 1977.

57) 송병기, 「癡菴發掘 沈興澤報告書 副本에 대하여」, 『癡菴申奭鎬博士誕生100周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白山學報』 70, 2004, 77~79쪽.

58) 이에 대해서는 宋炳基, 「高宗朝의 鬱陵島·獨島 經營」,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會會, 1985 및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에 상세하다.

59) 일본 측 자료에는 『軍艦新高行動日誌』(防衛廳 戰史部 所藏)에 1904년 9월 25일 ‘한인은 이를 독도라고 쓰고(韓人之ヲ獨島ト書シ)’라고 한 것이 최초의 독도 명칭 기록이다(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111쪽).

## ○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자)

…내부에서 指令하기를 遊覽道 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客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 日本 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 하였더라.

## ○ 『제국신문』(1906년 5월 1일자)

…내부에서 훈령하기를 일인이 호구 도사는 兪혹무괴흔 일어어니와 점령하였다는 말은 무기흔 일이니 靖이상지흔거든 일본리스에게 교섭하야 처단하라 하였더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의하면, 내부에서는 울도군수에게 일본인이 독도를 일러 일본 속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 보고가 매우 아연할 일이라고 지령했다.<sup>60)</sup> 『제국신문』의 기사도 『대한매일신보』와 비슷한데, ‘일본리스’에게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대한매일신보』에 없는 지령 내용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일본리스’는 1906년 2월 설치된 統監府의 지방기구인 理事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청의 수장이 理事官이었다.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 內部에서는 일본과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外部에 요청하여 日本公使館에 조회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형태였다. 그런데 외부가 폐지되고 통감부가 설치된 상태에서 일본과의 영토 문제는 통감부로 조회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울도군의 보고를 받고 일본 이사와 교섭하라는 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대한제국 측에서 조회를 했는지 여부는 영토 편입의 불법성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50~60년대 한일 간 독도에 관한 왕복외교문서에서 일본 측은 독도를 영토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관할권에 대해 외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sup>61)</sup>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1904년 일본이 소위 한일협

60) 『대한매일신보』의 기사 중 ‘客或無怪’는 『제국신문』에서 ‘兪혹무괴’라고 했다. 이는 ‘혹시’, ‘아마도’라는 의미의 ‘容或’이 맞는 표현이고, ‘客或’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61) 外交部,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일본정부견해』 1(1953.7.13): ‘일본정부견해’, 4(1962.7.13), 1977.

약을 강요하여 외국인 고문이 외교 실권을 장악하던 상태에서 '외국에 의해 문제된 일이 없다'고 하여 마치 한국이 독도 편입을 인정한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sup>62)</sup>

그런데 일본 이사와 교섭하라는 내부의 지령을 받은 울도군수가 이사청에, 또는 내부가 직접 통감부에 조회를 했다면, 이는 한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신문기사가 있다. 1906년 7월 13일자 『皇城新聞』에는 「鬱島郡의 配置顛末」이라는 제목하에 통감부가 내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와 군청 設始 연월을 示明하라는 公函을 보내, 내부에서 이를 알려준 기사가 실려 있다. 내부는 울도군의 연혁을 밝히고, '울도군의 소관 도서는 竹島, 石島이고,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 200여 리'라고 답했다.<sup>63)</sup>

상기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왜 1906년 7월에 통감부에서 내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밝혀달라고 했는지이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통감부 이사청과 교섭하라는 내부의 지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령이 있는 지 두 달여 후 통감부에서 내부로 울도군의 소속도서를 밝히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시기적으로 통감부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통감부에서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내부에 문의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sup>64)</sup>

한편, 내부는 통감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죽도, 석도라고만 밝히고,

62) 外交部,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한국정부건해」 3(1956.9.20), 1977.

63) 『皇城新聞』, 光武 10년(1906) 7월 13일.

이 신문 기사는 2008년 2월 22일자 일본 『山陰中央新聞』에 의해 일반에 알려졌다. 『山陰中央新聞』에서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죽도, 석도를 언급하면서 울도군의 동서 거리를 60리라고 한 것은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즉 석도가 독도라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87.4km이기 때문에 60리보다 훨씬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거리는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울릉도 섬 크기라고 할 수 있다. 金正浩 「大東輿地圖」(1861)의 울릉도 주기에는 섬 크기를 설명하면서 동서 60리, 남북 40리라고 했다. 아마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4) 1906년 9월 울도군은 내부의 명을 받아 군의 경계 위치와 호구장적을 조사하여 보고했는데, 이 또한 시기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호구 조사 결과만 신문에 실려 있어 경계 위치를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제국신문』, 光武 10년(1906) 9월 26일).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달 전에 있던 심홍택의 보고와 이에 따른 지령을 통해 볼 때, 당시 내부에서는 독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에 독도를 소관 도서로 밝히지 않고 석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석도가 곧 독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감부에 보내는 공문인 만큼 일반화된 명칭인 '독도'가 아닌 공식 행정 명칭인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를 명기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한 심홍택의 보고는 의정부와 내부 등의 중앙 정부 및 언론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파장이 미쳐 黃玆은 『梅泉野錄』, 『梧下記聞』 등의 1906년조에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領地라고 勒稱한다며 비판했다.

## 5. 맺음말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와 일본에 의한 울릉도 침탈이 본격화되었다. 러시아는 울릉도 삼립벌채권을 획득하여 이를 경영하려 했고,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잠입해서 불법적으로 벌채와 어업을 행했다. 더욱이 일본은 1902년 경찰관주재소까지 설치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다. 이처럼 울릉도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던 시기에 심홍택이 울도군수로 부임했다. 그가 재임하던 동안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도 행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독도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심홍택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러·일의 침탈이 행해지고 있는 울도군의 상황과 대한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홍택은 울도군에 도입하여 일본인에 의한 폐해가 극심함을 인식하고, 1903년 4월 27일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有馬高孝)를 만나 일본

인의 별채에 대해 항의하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군수가 직접 일본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곧 일본 경부와의 대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여 정부간 해결을 기대했다.

보고를 받은 대한제국 외부에서는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일본인의 별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공사는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인들이 울릉도 개척을 도와주었고, 일본 경찰관주재소 설치도 이미 울도군수에게 허락을 받은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침탈은 날로 더해갔다. 더욱이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로는 울도군수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을 항의할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져 버렸다.

둘째, 1903년 9월 러일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시기에 러시아 함선이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 함선의 대관은 병사들을 이끌고 울도군 관아를 에워싼 상태에서 심홍택과 만나 대담을 나눴다. 그 주요 내용은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벌목과 일본 경찰의 주재 문제였다. 러시아 측으로서는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대담의 내용만으로는 삼림벌채의 권리 주장이었지만, 내륙 측량과 지도 제작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러일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군사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한 내부의 지령 중, 『제국신문』에는 일본 이사와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실려 있다. 이를 보면 울도군수가 내부의 지령을 받고 통감부 이사청으로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은 내부의 지령이 있는 지 두 달여 후인 1906년 7월 통감부가 내부로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문의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의 여부는 1950~60년대 한일 간 왕복외교문서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현재 대한제국 측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 이사와 교섭하라는 내부의 지령과 통감부에서 내부

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문의한 것을 보면 어떠한 경로였는지 대한제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11. 7. 1, 심사수정일 : 2011. 8. 5, 게재확정일 : 2011. 8. 16)

주제어 : 沈興澤, 蔚島郡, 蔚陵島, 森林伐採權, 러시아, 獨島, 指令, 統監府, 理事廳, 제국신문, 勅令 第41號, 竹島, 石島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y Governor who Name is Sim  
Heungtag Report, Those Time of Invasion of Russia and  
Japan to the Island of Ulleung

Hong, Jung-w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land of Ulleung in early twenty century. And specially focus of person's report, county governor who name is Sim Heungtag. At that time, when Sim Heungtag served in the Island of Ulleung, the a lot of damage from the Japanese. Over time, the Japanese do not have permission to hold the fish were living chopping wood. There ignoring the county governor and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Empire of Daehan. Therefore Empire of Daehan is the Island of Ulleung is upgrade by Emperor order of number 41. That time was a very sensitive time. From the late 19th century Japanese controled the Island of Ulleung. In 1902, Japanese Government dispatched police officers.

And the same time, Russians thought of as a military base was important Island of Ulleung. So Russian warships to visit in 1903 and conversation with the county governor Sim Heungtag. The Russians investigation of island and the problem of Japanese at island.

In this situation, the county governor Sim Heungtag, investigation and reporting of Japanese aggression. And therefore, protection of Japanese invasion and trying to establish autonomy. At the same time, Announce the news by newspaper of Empire(帝國新聞), those treatment of between Empire of Daehan and Japanese. So this paper will be discussed, the county governor's response about the Japanese invasion and Circumstances of the island of Ulleung.

Key Words : Sim Heungtag(深興澤), Empire of Daehan(大韓帝國), the County Governor, the Island of Ulleung(鬱陵島), Chopping Wood(森林伐採), Russia, Japanese, Dokdo(獨島), Newspaper of Empire(제국신문), Emperor Order of Number 41(勅令 제41호), Russian Warships(러시아 함선)